

출자회사관리규정

제정 2009.10. 1 규정 제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달성과 성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다른 규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공사가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회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사가 최대주주가 아닌 출자회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자로 하여금 공사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제3조(관리의 기본방향) 공사는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 감독한다.

제2장 관리업무

제4조(관리의 범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경영목표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관부서) ① 제4조에 따른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업무는 출자회사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주관부서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주주총회 등 안건처리) 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하여 공사의 의사가 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사항) 출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
2. 임원의 임용(승진과 채용)
3. 그 밖에 중요 경영방침에 관한 사항

제8조(보고사항)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업무계획 및 실적
2.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등 중요사고의 발생

제3장 경영목표, 예산 및 경영실적 평가

제9조(경영목표의 검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출자회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자회사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하며, 필요할 경우 기능별로 손익

예산, 자본예산과 구매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하도록 한다.

제11조(경영평가편람의 작성)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의 다음 연도 경영평가편람을 제9조와 제10조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이를 12월 31일까지 출자회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실적 보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제12조에 따른 경영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출자회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기술적 분야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은 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6월 30일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자회사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결정한다.

제14조(사장경영계약) 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공사 사장과 출자회사 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서에는 출자회사 사장의 경영목표와 경영평가편람이 첨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기업진단

제15조(검사 등)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출자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 또는 감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기업진단) ① 공사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진단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조(직원의 파견 등) ①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출자회사와 협의하여 공사의 교육과정에 출자회사 직원을 연수하게 하거나, 공사의 각 부서에 실무습득을 위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연구보고서, 정보와 통계자료, 경영개선사례 및 전산 소프트웨어 등 출자회사의 경영능률 향상과 기술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만한 공사의 지적소유물을 출자회사로 하여금 활용토록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9.10.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